産業財産權制度 대폭 改正

1.13 公布…9.1부터 施行

特許法改正法律

法律第 4207號
1990.1.13 公布

〈前號에서 계속〉

第134條(特許廳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의 無效審判)

① 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1. 그 特許發明을 실시하기 위하여 第89條의 許可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出願에 대하여 延長登錄이 된 경우
2. 그 特許權者 또는 그 特許權의 專用實施權 또는 登錄된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가 第89條의 許可 등을 받지 아니한 出願에 대하여 延長登錄이 된 경우
3. 延長登錄에 의하여 연장된 期間이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없었던 期間을 초과하는 경우
4. 당해 特許權者가 아닌 者의 出願에 대하여 延長登錄이 된 경우
5. 第90條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出願에 대하여 延長登錄이 된 경우

② 第133條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審査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 한다.

③ 延長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延長登錄에 의한 存續期間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無效審決이 확정된 延長登錄이 第91條 第1項 第3號의 規定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없었던 期間을 초과한 期間에 관하여 그 延長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초과한 期間은 그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第135條(權利範圍 確認審判) ① 特許權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特許發明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特許權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權의 權利範圍 확인심판을 請求하는 경우에 特許請求範圍의 請求項이 2 이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請求할 수 있다.

第136條(訂正審判) ① 特許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許發明의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1. 特許請求範圍를 減縮하는 경우
2. 誤記를 訂正하는 경우
3. 不明瞭한 기재를 釋明하는 경우

② 第1項의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은 特許請求範圍를 실질적으로 擴張하거나 變更할 수 없다.

③ 第1項 第1號의 경우에는 訂正후의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이 特許出願時 特許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審判官은 訂正審判請求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請求人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⑤ 審判官은 訂正審判請求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고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적합 경우에는 請求公告決定을 하여야 한다.

⑥ 第66條 第1項 내지 第3項·第5項 및 第70條 내지 第74條의 規定은 訂正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⑦ 第1項의 訂正審判은 特許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第133條 第1項의 無效審判에 의하여 特許權이 無效가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特許權者는 專用實施權者·質權者 또는 第39條 第1項·第100條 第4項 및 第10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第1項의 訂正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⑨ 特許發明의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을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訂正후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의하여 特許出願·出願公開·出願公告·特許査定 또는 審決 및 特許權의 設定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第137條(訂正의 無效審判) ① 利害關係人 및 審査官은 特許發明의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이 第136條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訂正의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33條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訂正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訂正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第138條(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①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特許發明이 第98條의 規定에 해당되어 실시의 許諾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他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그 他人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特許發明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 特許發明이 그 特許發明의 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發明 또는 登錄實用新案에 비하여 상당한 技術상의 進步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第1項의 審判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는 者의 特許發明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通常實施權을 許與받은 者가 실시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通常實施權의 許諾을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特許發明의 범위 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는 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意匠權者 또는 그 專用實施權者에 대하여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責任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支給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通常實施權者는 그 對價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 아니하면 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意匠을 실시할 수 없다.

第139條(共同審判의 請求 등) ① 동일한 特許權에 관하여 第133條 第1項·第134條 第1項 및 第137條 第1項의 無效審判 또는 第135條 第1項의 權利範圍確認審判을 請求하는 者가 2人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全員이 共同으로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共有인 特許權의 特許權者에 대하여 審判을 請求하는 때에는 共有者 全員을 被請求人으로 하여 請求하여야 한다.

③ 特許權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審判의 共有者가 그 共有인 板利에 관하여 審判을 請求하는 때에는 共有者 全員이 共同으로 請求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人이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被請求인 중 1人에 관하여 審判節次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全員에 관하여 그 效力이 발생한다.

第140條(審判請求方式) ① 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當事者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審判事件의 표시
3. 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審判請求書의 補正은 그 요지를 變更할 수 없다. 다만, 第1項 第3號에 規定된 請求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35條 第1項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때에는 필요한 明細書 및 圖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第138條 第1項의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의 審判請求書에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特許의 番號 및 名稱
2. 실시되어야 할 他人의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이나 登錄意匠의 番號·名稱 및 特許나 登錄의 年月日
3.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意匠의 通常實施權의 對價

⑤ 第136條 第1項의 訂正審判을 請求할 때에는 審判請求書에 訂正한 明細書 및 圖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141條(審判請求書의 却下와 即時抗告) ① 審判長은 審判請求書가 第140條 第1項 및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그 欠缺의 補正을 命하여야 한다.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審判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된 期間내에 請求人이 欠缺을 補正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決定으로 審判請求書를 却下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불복이 있는 者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⑤ 第4項의 即時抗告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即時抗告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⑥ 抗告狀에는 却下된 審判請求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142條(補正不能한 審判請求의 審決却下) 不適法한 審判請求로서 그 欠缺을 補正할 수 없는 때에는 被請求人에게 答辯書 제출의 機會를 주지 아니하고 審決로써 이를 却下할 수 있다.

第143條(審判官 및 抗告審判官) ① 特許廳長은 審判請求가 있는 때에는 審判官으로 하여금 이를 審判하게 한다.

② 審判官 및 抗告審判官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審判官 및 抗告審判官은 職務상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44條(審判官의 지정) ① 特許廳長은 각 審判事件에 대하여 第146條의 規定에 의한 合議體를 구성할 審判官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審判官중 審判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는 者가 있는 때에는 다른 審判官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第145條(審判長) ① 特許廳長은 第14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審判官 중에서 1人을 審判長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審判長은 그 審判事件에 관한 事務를 總括한다.

第146條(審判의 合議體) ① 審判은 3人의 合議體가 이를 행한다.

② 第1項의 合議體의 合意는 過半數에 의하여 이를 決定한다.

第147條(答辯書 제출 등) ① 審判長은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請求書의 副本을 被請求人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 審判長은 第1項의 答辯書를 受理한 때에는 그 副本을 請求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審判長은 審判에 관하여 當事者를 審問할 수 있다.

第148條(審判官의 除斥) 審判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審判 관여로부터 除斥된다.

1. 審判官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事件의 當事者·參加人 또는 特許의 異議申請人인 경우
2. 審判官이 事件의 當事者·參加人 또는 特許의 異議申請人의 親族·戶主·家族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審判官의 事件의 當事者·參加人 또는 特

許의 異議申請人의 法定代理人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4. 審判官이 事件에 대한 證人·鑑定人으로 된 경우 또는 鑑定人이었던 경우
5. 審判官이 事件의 當事者·參加人 또는 特許의 異議申請人의 代理人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6. 審判官이 事件에 대하여 審査官 또는 審判官으로서 査定 또는 審決에 관여한 경우
7. 審判官이 事件에 관하여 직접 利害關係를 가진 경우

第149條(除斥申請) 第148條에서 規定하는 除斥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當事者 또는 參加人은 除斥申請을 할 수 있다.

第150條(審判官의 기피) ① 審判官에서 審判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때에는 當事者 또는 參加人은 이를 기피할 수 있다.

② 當事者 또는 參加人은 事件에 대하여 審判官에게 書面 또는 口頭로 陳述을 한 후에는 審判官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1條(除斥 또는 기피의 疎明) ① 第149條 및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除斥 및 忌避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원인을 기재한 書面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口頭審理에 있어서는 口頭로써 할 수 있다.

② 除斥 또는 기피의 원인은 申請한 날부터 3日 이내에 疎明하여야 한다.

第152條(除斥 또는 忌避申請에 관한 決定) ① 除斥 또는 忌避申請이 있는 때에는 審判에 의하여 이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 除斥 또는 기피의 申請을 당한 審判官은 그 除斥 또는 기피에 대한 審判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는 불복할 수 없다.

第153條(審判節次의 중지) 除斥 또는 기피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申請에 대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審判節次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54條(審理 등) ① 第133條 第1項·第134條 第1項 및 第137條 第1項의 無效審判은 口頭審理에 의한다. 다만, 審判長은 當事者 또는 參加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書面審理로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無效審判외의 審判은 書面審理에 의한다. 다만, 審判長은 當事者 또는 參加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口頭審理로 할 수 있다.

③ 口頭審理는 이를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審判長은 第1項 또는 第2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口頭審理에 의한 審判을 할 경우에는 그 期日 및 場所를 정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當事者 및 參加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事件에 출석한 當事者 및 參加人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審判長은 第1項 또는 第2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口頭審理에 의한 審判을 할 경우에는 特許廳長이 지정한 職員에게 期日마다 審理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調書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⑥ 第5項의 調書에는 審判의 審判長 및 調書를 작성한 職員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⑦ 民事訴訟法 第142條·第143條 및 同法 第145條 내지 第149條의 規定은 第5項의 調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⑧ 民事訴訟法 第133條·第271條 및 同法 第339條의 規定은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55條(참가) ① 第13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者는 審理가 終結될 때까지 그 審判에 참가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參加人은 被參加人이 그 審判의 請求를 취하한 후에도 審判節次를 續行할 수 있다.

③ 審判의 결과에 대하여 利害關係를 가진 者는 審理가 終結될 때까지 當事者의 一方을 補

助하기 위하여 그 審判에 참가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參加人은 一切의 審判節次를 행할 수 있다.

⑤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參加人에 대하여 審判節次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被參加人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발생한다.

第156條(참가의 申請 및 決定) ① 審判에 참가하고자 하는 者는 參加申請書를 審判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審判長은 參加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參加申請書의 副本을 當事者 및 他參加人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③ 參加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審判에 의하여 그 참가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第157條(證據調査 및 證據保全) ① 審判에서는 當事者·參加人 또는 利害關係人이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나 證據保全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調査나 證據保全은 民事訴訟法 第347條의 規定에 의한 管轄法院 기타의 法院에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③ 民事訴訟法중 證據調査 및 證據保全에 관한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調査 및 證據保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審判官은 過怠料의 決定을 하거나 拘引을 命하거나 保證金을 供託하게 하지 못한다.

④ 證據保全 申請은 審判請求전에는 特許廳長에게, 審判繫屬중에는 그 事件의 審判長에게 하여야 한다.

⑤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전에 證據保全 申請이 있는 때에는 證據保全의 申請에 관여할 審判官을 지정한다.

⑥ 審判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으로 證據調査나 證據保全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當事者·參加人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158條(審判의 進行) 審判長은 當事者 또는 參加人이 法定期間 또는 指定期間내에 節次를 밟지 아니하거나 第154條 第4項에서 規定한 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審判을 進行할 수 있다.

第159條(職權審理) 審判에서는 當事者 또는 參加人이 申請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審理할 수 있다. 이 경우 當事者 또는 參加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160條(審理·審決의 併合 또는 分離) 審判官은 當事者 雙方 또는 一方의 동일한 2 이상의 審判에 대하여 審理 또는 審決을 併合하거나 分離할 수 있다.

第161條(審判請求의 취하) ① 審判請求는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答辯書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2 이상의 請求項에 관하여 第133條 第1項의 無效審判 또는 第135條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請求項마다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審判請求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第162條(審決) ① 審判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審決로써 이를 終結한다.

② 第1項의 審決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審決한 審判官은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1. 審判의 審號
2. 當事者·參加人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3. 審判事件의 표시
4. 審決의 主文(第138條의 審判에 있어서는 對價를 포함한다)
5. 審決의 이유(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6. 審決年月日

③ 審判長은 事件이 審決을 할 정도로 成熟한 때에는 審理의 終結을 當事者 및 參加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審判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理終結을 통지한 후에도 當事者 또는 參加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審理를 再開할 수 있다.

⑤ 審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理終結通知를 한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⑥ 審判長은 審決 또는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謄本을 當事者 및 參加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163條(一事不再理) 이 法에 의한 審判의 審決이 확정 登錄되거나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第164條(審判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 ① 審判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他審判의 審決이나 抗告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訴訟節次가 完結될 때까지 그 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② 訴訟節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法院은 特許에 관한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第165條(審判請求) ① 第133條 第1項·第134條 第1項·第135條 및 第137條 第1項의 審判費用의 부담은 審判이 審決에 의하여 終結할 때에는 그 審決로써, 審判이 審決에 의하지 아니하고 終結할 때에는 決定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民事訴訟法 第89條 내지 第94條·第98條 第1項 및 第2項·第99條·第101條·第102條 및 同法 第106條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費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第136條 또는 第138條의 審判費用은 請求人 부담으로 한다.

④ 民事訴訟法 第93條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人이 부담하는 費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 審判費用額은 請求에 의하여 審決 또는 決定이 확정된 후에 特許廳長이 이를 決定한다.

⑥ 審判費用의 범위·금액·납부 및 審判에서 節次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費用의 支給에 관하여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民事訴訟費用法중 해당 規定의 예에 의한다.

⑦ 審判의 代理를 한 辨理士에게 當事者가 支給한 또는 支給할 報酬는 特許廳長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審判費用으로 본다. 이 경우 數人의 辨理士가 審判의 代理를 한 경우라도 1人의 辨理士가 審判代理를 한 것으로 본다.

第166條(審判費用額·對價 및 補償金額에 대한 債務名義) 審判費用額 또는 이 法에 의한 對價와 補償金額에 관하여 확정된 決定은 執行力있는 債務名義와 동일한 效力을 가진다. 이 경우 執行力있는 正本은 特許廳 公務員이 이를 부여한다.

第167條(抗告審判의 請求) 拒絶査定 또는 審判의 審決을 받은 者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拒絶査定謄本 또는 審決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抗告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62條 第2項 第4號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審決에 대하여는 그 對價나 費用만을 불복하는 抗告審判請求를 할 수 없다.

第168條(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請求方式) ①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을 請求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抗告審判請求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出願人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出願日字 및 出願番號
3. 發明의 名稱
4. 審査官의 査定日字
5. 審判事件의 표시
6. 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特許廳長은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된 경우 당해 査定이 特許異議申請의 成立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特許異議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69條(補正却下決定대한 抗告審判의 請求) ① 第5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을

받은 者가 그 決定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抗告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68條 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抗告審判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判에 있어서 却下決定을 取消하는 審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 審決의 基本이 된 이유는 그 事件에 대하여 審査官을 覇束한다.

第170條(審査規定의 抗告審判에의 準用) ① 第50條·第51條·第63條 및 第66條 내지 第75條의 規定은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그 特許出願에 대하여 이미 出願公告가 있는 경우에는 第66條의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51條를 準用하는 경우에는 第51條 第3項중 "第16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判을 請求한 때"는 "第18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法院에 上告한 때"로 본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51條 第4項내지 第6項 및 第63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査定의 이유와 다른 拒絶理由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71條(審判規定의 抗告審判에의 準用) ① 第136條 및 第139條 내지 第166條의 規定은 抗告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46條 第1項중 "3人"은 "3人 또는 5人"으로 하고, 第164條 第1項중 "他審判의 審決이나 抗告審判의 審決"은 "他抗告審判의 審決이나 大法院의 判決"로 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44條를 準用하는 경우에는 第173條의 規定에 해당되는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事件의 抗告審判官 지정은 第175條 第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것에 한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65條를 準用하는 경우에는 第167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 및 第16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 決定에 대한 抗告審判에 관한 費用은 請求人 또는 異議申請人의 부담으로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47條 第1項 및 第2項·第155條 및 第156條의 規定은 第167條의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 및 第169條 第1項의 抗告審判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72條(審査 또는 審判節次의 效力) 審査 또는 審判에서 밝은 特許에 관한 節次는 抗告審判에서도 그 效力이 있다.

第173條(審査前置) 特許廳長은 第167條의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 請求가 있는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請求에 관한 特許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대한 補正이 있는 때에는 抗告 審判을 하기전에 審査官에게 그 請求를 다시 審査하게 하여야 한다.

第174條(審査規定의 審査前置에의 準用) ① 第51條·第57條 第2項·第77條 및 第148條 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은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 第50條 및 第63條의 規定은 抗告審判請求에 관련된 拒絶査定의 이유와 다른 拒絶理由를 발견한 경우에는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第50條·第66條 내지 第72條·第75條·第76條의 規定은 抗告審判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그 特許出願에 대하여 이미 出願公告가 있는 경우에는 第66條의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第175條(審査前置의 終結) ① 審査官은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결과 特許査定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抗告審判이 請求된 당초의 拒絶査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② 審査官은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결과 特許査定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51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 또는 第7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決定을 하지 아니하고 그 審査結果를 特許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